



2021. 03.

2021 충청남도 해외마케팅사업

2021년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용역 과업지시서(안)



충청남도경제진흥원
ChungCheongNam-Do Economic Promotion Agency

목 차

I. 사업 안내	1
1. 용역 개요	1
2. 추진 배경 및 목적	1
II. 과업 요청 사항	2
1. 세부 과업 내용	2
2. 과업의 보고	3
3. 추진 일정	3
4. 성과물의 제출	4
III. 유의사항	4
1. 일반 사항	4
2. 의무와 책임	5
3. 참여인력의 교체	5
4.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	6
5. 계약의 변경 및 해지	6
IV. 기타	7

I

사업 안내

1

용역 개요

- 용역명 : 2021년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
-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1. 12. 10.
- 용역범위 : 20개사
- 소요예산 : 총36,990,000원(부가세 포함)
- 계약방식 : 조달청 나라장터 일반경쟁 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2

추진 배경 및 목적

- (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)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오프라인 교역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,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규모는 지속 증대되고 있어 도매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
- (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축소) 국내 2020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5,3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.2% 감소(통계청)
 - 국가(대륙)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중국 1조3,480억원 (-19.0%)이며, 경제활동 재개로 교역량 확대됨에 따라 2021년도 수출은 전년 대비 8.5% 증가 전망(한국은행)
- (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)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무역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정된 내수시장 극복 지원

3

기대 효과

-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 하는 비대면 유통망 상황에 발 맞춘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
- 해외 바이어와의 무역 거래 가능성 향상 및 시장 확대 기여
- 도내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, 수출기반 구축을 통한 수출 활성화 기여

○ B2B e-마켓 플레이스 등록 및 운영

- ① B2B e-마켓 플레이스 가입 및 유료회원 전환
- ② 지원 기업 자료수집 및 바이어 발굴에 맞는 온라인 홍보관 구축
 - 온라인 홍보관 구축에 필요한 번역 및 제품 촬영
 - 제품 특징 부각을 위한 상품 리스팅 템플릿 제작 지원(번역 포함)
 - 온라인 바이어 거래 제의서 제작 등
- ③ 타깃 바이어 마케팅 지원
 - 해외 잠재·타깃 바이어 대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유효바이어 발굴
 - 품목별 타깃 국가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거래제의서 발송
 - 해외 바이어 요청사항 대응
- ④ 인콰이어리 필터링 및 바이어 응대
 - 거래 가능성 및 신뢰성 높은 인콰이어리 필터링 및 참가기업 전달
 - * 거래상담 가능성 있는 바이어 대상 유선상담 지원
- ⑤ 계약성사 높은 참가기업의 바이어 대상 신용조사 지원
 - * 최대 지원 규모 제안
- ⑥ 상담 지원 및 기타(비용 발생시 지원업체 부담)
 - 상담 바이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
 - EMS 및 DHL 이용 물품 배송 등 지원
 - 물품 문의, 반품 등 CS 전담 팀 구성으로 CS 업무처리 지원
 - SNS(Facebook, Linkedin 등) 활용 마케팅 지원

○ 기타 제안 사항

- ① 특화 마케팅 제안 및 지원 : 제안사의 차별화 마케팅 지원
 - * 계약 가능성 높은 바이어와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(장소, 장비, 통역 등)
- ② 사후관리 지원 : 용역 완료 후 기본 6개월
 - 2021년 용역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(월간보고 제출)
 - 2020년 지원 업체 중 계약 가능성 있는 업체의 성약 지원

2

과업의 보고

○ 착수보고

-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

○ 월간 실적보고

- 참가기업별 과업수행 현황 및 문제점, 추진성과, 향후계획 등 매월 서면으로 제출

- 지원 업체 성약 현황 분기별 1회

* 상담액, 계약추진액, 계약액, 실제 수출실적

○ 과업중간 및 결과보고

- 과제별·수혜기업별 진행 상황, 마케팅활동 내용 및 성과, 향후 계획 등 과업 수행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

- 과업에 따른 수혜기업별 지원내용 및 성과, 마케팅활동 내용, 수혜기업 의견, 사후관리 방안 등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과업수행 및 성과를 서면으로 종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며, 완료 보고회 개최

3

추진 일정

구분	추진 일정(W/M)		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
세부 계획 수립												
대행기관 선정												
참가기업 모집												
착수 보고회												
사업 수행												
중간보고												
완료보고회												

※ 착수 보고회 : 지원업체 선정 후 지원업체가 참여하는 설명회와 겸함

(착수 보고회 일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)

※ 착수, 월별, 중간, 결과보고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4

성과물의 제출

- 결과보고서 : 5부
 - 내용 : 용역 전체 성과 및 지원 업체별 성과 근거 파일 포함
 - * 상담 또는 계약 관련 서류는 정식 서류등을 필히 포함 함
 - * 지원 업체별 성과 : 업체별 온라인 홍보물 등은 원본 이미지 소스 제공
- 결과보고서 파일 : 1식

III

유의 사항

1

일반사항

- 관련 과업의 특성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
-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및 내용 일부를 변경 요청 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 하여야 함
- 과업 특성상,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범위,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
- 제안서는 추상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제반 요구사항에 대한 화면 설계도, 과업기간 내 용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사 특장점 등을 실적 증명서에 기반하여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

2**의무와 책임**

-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
- 용역사업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그 필요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
-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 완료 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·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·조치하여야 함
-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,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
- 용역사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

3**참여인력의 교체**

-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사업 책임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용역사업 책임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
-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책임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

4**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**

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용역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
-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,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
-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과업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함

5**계약의 변경 및 해지**

-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·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게 됨
 -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음
 - 1) 본 계약조건 위반(기밀누설 등)으로 서면을 통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) 기타 관계규정, 예산사정 등으로 지속적인 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
 -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 할 경우

-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 과업 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 -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본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,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,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함

IV

기타

-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들의 세부 추진절차 및 전략 등은 본 사업관련 제안서에 의하되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
- 선급금은 착수계 제출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의해 지급함
- 본 기타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자 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계약에 의하거나,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,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
 - 용역사업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
 - 본 과업에 관한 모든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.

끝.